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	--------

발의연월일	2009. 3. .
발 의 자	이창도 의원 외 1

1. 제안이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뜻을 정의함(안 제3조)
- 나. 장기기증의 범군민 확산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 다. 장기기증 접수창구와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 라.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1회 추경예산 반영(천원)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거창군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라 함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거창군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방의약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제10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거창군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읍·면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3.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내의 사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예산확보 시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공설묘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②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③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④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